國會圖書館法案

議案番號	344

發議年月日 : 1988. 12. 13.

發 議 者 : 李鍾贊·李基澤·金正吉·劉基洙 議員外 224人

提案理由

國會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圖書館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法을 制定하고자 하는 것임.

主要骨子

가. 圖書館은 圖書 기타圖書館資料·憲政資料 및 文獻情報를 蒐集·整理·分析·保存하고 圖書館奉仕와 立法資料分析業務를 行함으로써 國會의 立法活動을 지원하고, 國會의 立法資料의 電算化計劃 樹立 및 推進등 國會業務의電算化事務를 管掌함(案 第2條第1項 및 第2項).

나. 圖書館은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國家機關·公共團體·公衆등에 대하여도 그 奉仕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案 第2條第3項 및 第4項).

다. 圖書館所屬公務員중 5級 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館長이 任免하되, 議長은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任用權의 一部를 館長

공백

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함(案 第3 條).

라. 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하되, 政務職으로 하고 그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함(案 第4條).

마. 國會電算化事務를 위하여 館長은 事務總長에게, 事務總長은 館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館長은 立法資料分析業務와 관련된 資料의 제공을 關係國家機關 및 公共團體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案 第5條).

바. 圖書館의 補助機關은 局長·室長 및 課長으로 하고 局·室·課 및 擔當官의 종류, 定員, 分掌事務등은 規則으로 정하도록 함(案 第6條).

사. 國家機關·公共團體 및 이들 이외의 者가 立法情報支援에 필요한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圖書館에 提供 또는 納本하도록 하되 그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館長은 關係國家機關 및 公共團體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國家機關 및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納本한 경우에는 그 資料에 대하여 補償하도록 함(案 第7條).

공백

아. 館長은 物品 또는 금전의 기증을 받을 수 있고, 圖書館資料로서 적합치 아니하거나 利用價値가 상실된 資料를 相互交換 또는 移管하거나 廢棄할 수 있도록 함(案 第8條 및 第9條).

자. 圖書館의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 및 圖書館 情報協力網構成등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館長 所屬下에 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함(案 第10條).

공백

法律 第 號

國會圖書館法案

第 1 條(目的) 이 法은 國會圖書館(이하 "圖書館"이라 한다)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(職務) ①圖書館은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·憲政資料 및 文獻情報를 蒐集·整理·分析·保存하고 圖書館奉仕와 立法資料分析業務를 행함으로써 國會의 立法活動을 지원한다.

②圖書館은 國會의 立法資料 및 事務에 대한 電算化計劃의 수립과 추진등 國會業務의 電算化事務를 管掌한다.

③圖書館은 第 1 項의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國會 이외의 國家機關, 公共團體, 教育·研究機關 및 公衆에 대하여 圖書館奉仕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奉仕의 對象과 內容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 3 條(公務員의 任用) ①圖書館에 國會圖書館長(이하 "館長"이라 한다) 1 人 이의에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.

② 5 級 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館長이 任免한다. 다만, 議長은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任用權의 일부를 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.

공백

第 4 條（館長） ①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.

②館長은 政務職으로 하고,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

③館長은 議長의 監督下에 圖書館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·監督한다. 다만, 圖書館關聯事務중 人事行政·豫算會計·國有財産管理·物品管理·非常計劃業務·公職者財産登錄業務등에 관하여 國會事務處法·國家公務員法·豫算會計法·國有財産法 기타 다른 法令에서 國會事務處 또는 國會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로 規定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5 條（電算化事務등을 위한 協調） ①第 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國會業務의 電算化事務를 행함에 있어서 館長은 國會事務總長에게, 國會事務總長은 館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으며, 協調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.

②館長은 立法資料分析業務와 관련한 資料의 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國家機關 및 公共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공백

第6條(組織) ①圖書館의 補助機關은 局長·室長 및 課長으로 한다.

②館長 및 局·室長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, 館長밑에 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둘 수 있다.

③局長은 2級 또는 3級, 課長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, 室長은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相當 또는 3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, 擔當官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4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

④局·室·課 및 擔當官의 種類·定員·分掌事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7條(資料의 納本) ①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規則이 정하는 立法情報支援이나 國際交換에 필요한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10部를 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國家機關 및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圖書·連續刊行物

공백

기타 規則이 정하는 立法情報支援에 필요한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納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圖書館은 納本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相當한 金額을 補償하여야 한다.

③館長은 資料의 提供 및 納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國家機關 및 公共團體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納本의 節次·補償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8條(寄贈) 館長은 圖書館에 物品 또는 金錢의 寄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.

第9條(圖書館資料의 相互交換·移管 및 廢棄) ①館長은 所藏資料중 圖書館資料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資料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圖書館·國家機關·公共團體와 相互交換하거나 移管할 수 있다.

②館長은 所藏資料중 利用價値가 상실되거나 汚損된 資料가 있는 경우 이를 廢棄 또는 除籍할 수 있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交換·移管 및 廢棄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10條(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) ①圖書館의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 및 圖書館情報協力網構成등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

공백

여 館長所屬下에 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國會圖書館發展諮問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.

第11條(時差制근무) 館長은 國會의 會期중에 한하여 業務의 사정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第12條(委任規定) 이 法에서 規則으로 정하도록 한 事項과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.

附 則

①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②(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會事務處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(憲政資料官室을 포함한다)의 事務分掌機構 및 定員등은 이 法에 의한 規則이 制定·施行될 때까지 國會圖書館의 事務分掌機構 및 定員등으로 본다. 다만, 종전의 國會事務處法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長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圖書館長이 새로 任命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.

③(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會事務處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所管業務(憲政資料 業務를 포함한다)를 담당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에 國會圖書館所屬公務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.

공백